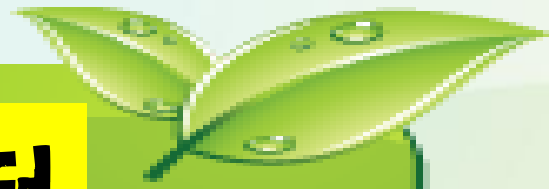


백세노인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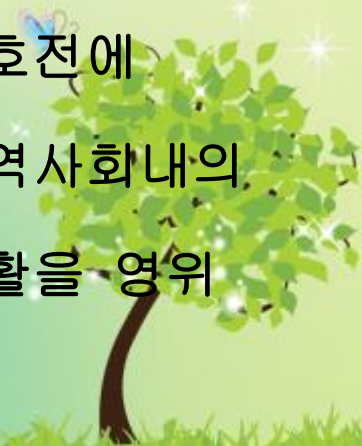
어르신의 행복한 오늘
금쪽같은 부모님을
따뜻한 손발이 되어 섬겨드립니다.



백세노인복지센터



본 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신체, 가사, 개인, 정서, 문화적 도움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질환등을 예방,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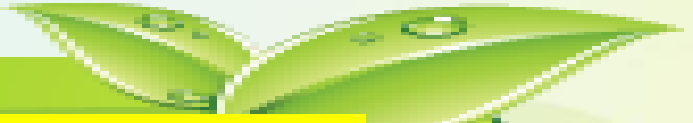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 1) 이용 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수급자 모집은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군청, 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의 추천, 수급자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홍보지 등에 의한다.(오프라인)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등급이 결정되기 전에 본 기관에 상담을 통하여 의뢰된 경우, 보호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만을 제공한다. 본 기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지아니하며 향후 보호자와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힘쓴다.
- 

- 4) 본 기관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 5) 본 기관의 직원은 장기요양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등급 외 수급자에게도 고객 입장으로 관리하여 향후 보호자와의 관계형성에 힘쓴다.
향후 고객이 될 소중한 자원 임을 기억한다.
- 6)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을 통한
홍보 · 모집도 제공된다.(온라인)





사업의 내용 및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은 임실군 임실읍에 위치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 도움, 체위변경, 머리 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 준비에서 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 입히기, 목욕 전 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 다. 노인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 라. 인적·물적 복지 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쓴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 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2,495>	150분 이상	48,250<7,238>
60분 이상	24,120<3,618>	180분 이상	54,320<8,148>
90분 이상	32,510<4,877>	210분 이상	60,530<9,080>
120분 이상	41,380<6,207>	240분 이상	66,770<10,016>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또는 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 재산등이 일정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4.01.01)

○ 방문 목욕의 1회당 이용 시간 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7,670<7,15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 이상 60분 미만)	38,136<5,72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84,670<12,70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40분이상 60분미만)	67,736<10,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76,340<11,45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40분 이상 60분 미만)	61,072<9,160>

○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 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위한소득, 재산등이일정금액이하인자에관한고시해당자)	9% 또는 6%

감사합니다

